

## 교육/인력양성위원회 규정

2019년 12월 09일 개정

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교육/인력양성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함)를 둔다.

- (1) 본회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한 교육 사업 추진
- (2) 본회 관련 인력양성 사업 협조
- (3) 산학연 인력 수요 요구 대응 및 협조

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위원장 1명
- 상임위원 약간명
- 실무위원 약간명

제3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
제4조 위원장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.

제5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연임할 수 있다.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.

제6조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